

January 17, 2020

Legal Update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국제조세 분야)

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제2조의 2 제4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2)

국조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역외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과세당국은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단,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이고 우회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그 동안 국내기업이 미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또는 침해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어 왔습니다. 2008년 법인세법 개정시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대법원은 위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 국내 미등록 특허를 ‘특허권’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로 보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ii)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침해보상대가는 ‘특허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개정으로 국내 과세권이 확보된다는 입장에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없이 이번 국내 세법의 개정만으로 미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또는 침해보상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타 주요 개정내용

- 가.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국기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5, 제98조의6)
-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를 모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경정청구절차로 일원화, 경정청구 대상에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 나.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제출방법 일원화(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3 제5항)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에 대해 전자신고를 의무화 함
- 다.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제11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 제1항)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기업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
- 라.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제12조,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2항)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이행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원래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을 누적하여 부과함)
- 마.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과세근거 신설(국조법 제11조 제7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등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하여 과세 가능
- 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포함한다는 규정 신설
- 사.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국조법 제27조 제4항 삭제,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41조의3)
- 상반된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상호합의 무효 조항 삭제
 - 상호합의 종결 전 납세자의 의견제출절차 신설

아.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제31조,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47조 제11항)

- 과세당국이 체약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는 조세정보의 범위에 납세의무자의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 포함
- 납세의무자에게도 실제 소유자 정보 요구 가능

자.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국조법 제31조 제11항, 제31조의2)

- 금융회사의 장은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계좌 개설 거절 가능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등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

차.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법 도입(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2)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카.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 보관/비치 의무 신설(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의3 제5항)

- 납세자가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현재가치할인법을 사용하는 경우 제반 가정이 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비치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기간 확대
- 특정외국법인이 능동적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투자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조춘
파트너변호사

☎ 02-316-4213
✉ ccho@shinkim.com



이남주
공인회계사

☎ 02-316-4675
✉ njlee@shinkim.com



우도훈
파트너변호사

☎ 02-316-1623
✉ dhwoo@shinkim.com



조서연
소속변호사

☎ 02-316-4362
✉ sy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